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보호대상아동 보험지원 확대〉

■ 문금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6665호)

2026. 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동찬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문금주의원 등 19인
2. 제 안 일 : 2026. 02. 09.
3. 회 부 일 : 2026. 02. 1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, 2024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9,904명,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아동은 2,578명,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7,703명임.

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은 건강, 발달, 교육 및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 다른 아동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를 별도로 조사·공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.

또한, 현재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

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의6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☐ 개정안은 아동종합실태조사 대상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함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의6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11조(아동종합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<u>아동의 양육</u> 및 생활환경, 언어 및 인지 발달, 정서적·신체적 건강, 아동안전,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,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	제11조(아동종합실태조사) ① --- ----- <u>아동</u> (<u>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여야 한다</u>)의 <u>양육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 <u><신설></u>	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5조의6(<u>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</u>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의

현행	개정안
	<u>범위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.</u>

- ☐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, 언어 및 인지 발달, 정서적·신체적 건강, 아동안전,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(법 제11조).
- ☐ 가장 최근에 실시된 『2023 아동종합실태조사』에는 전국 단위 아동 및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건강과 발달 및 교육, 아동의 관계 등 10개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음.

<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조사표>

영역	조사표	
	보호자용	아동용
일반 사항	가구원 정보, 교육수준, 장애등급, 혼인 상태, 근로능력 등	아동의 생년월일, 성별, 재학상태, (고교) 재학 유형
건강	건강상태(현재, 임신상태), 의료실태, 수면실태, 음주실태, 흡연상태 등	신체특성, 수면실태, 건강검진 활동, 체육활동, 스트레스, 인터넷이용실태, 음주 및 흡연 실태 등
발달 및 교육	부부관계, 기대교육수준, 영양 및 섭식, 미디어 노출 등	의사소통, 타인과 교류, 학습실태, 학교 생활 만족도 등
관계	가족, 지인과의 관계 등	주양육자와의 관계, 이성친구, 친구관계 등

영역	조사표	
	보호자용	아동용
양육 및 돌봄	양육 실태, 양육자 활동, 기타 양육 문제 등	-
여가 및 활동	방과후 시간, 자녀활동 관리 정도, 아동 권리 등	주중 및 휴일활동, 여가 및 생활, 학교 내외 커뮤니티 활동 등
안전 및 위험행동	위험활동 관리, 응급실태, 위험요인, 아동학대 및 훈육행태 등	안전활동, 안전교육, 피해 및 가해 실태, 흡연 및 음주 실태 등
지역사회 환경	거주지역 생활환경, 사회 신뢰성, 사회활동 등	거주지역 생활환경, 사회인식 등
물질적 환경	생활환경, 가구소득, 정부보조금, 재산 및 부채 등	결핍, 주관적 가정형편, 빈곤걱정 등
주관적 웰빙	문항별 해당 영역에 반영	성취 동기, 주관적 웰빙(국제지표) - 행복, 걱정, 우울, 만족, 가치

자료: 이상정 등, 『2023 아동종합실태조사』, 보건복지부, p.24.

□ 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아동 전반의 삶과 성장환경, 정책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음.

이에 조사 대상은 일반가정 아동(표본크기 총 5,500명)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은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음¹⁾.

□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함(법 제3조제4호).

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

1) 이상정, 앞의 글, p26.

뢰를 받은 때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데²⁾, 최근 5년간 신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총 1,978명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시설입소나 가정형 보호의 보호조치가 실시되었음.

<보호조치 현황>

(단위: 명, (%))

2) 「아동복지법」

제15조(보호조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. 28., 2020. 12. 29., 2023. 7. 18.>

1. 전담공무원,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·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
2. 「민법」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·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
3.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·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
4.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
5. 약물 및 알콜 중독, 정서·행동·발달 장애, 성폭력·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
6.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

연도	합계	증·장기 보호조치 결정								일시보호 조치		
		소계	시설입소					가정형 보호		소계	시설	가정형 보호
			양육 시설	자립 지원 시설	보호 치료 시설	공동 생활 가정	기타*	입양 대상 아동	가정 위탁			
'24	1,978	1,583	474	-	15	225	39	123	707	395	373	22
		(100)	(29.9)		(0.9)	(14.2)	(2.5)	(7.8)	(44.7)	(100)	(94.4)	(5.6)
'23	2,054	1,746	524	-	13	222	42	162	783	308	266	42
		(100)	(30.0)		(0.7)	(12.7)	(2.4)	(9.3)	(44.8)	(100)	(86.4)	(13.6)
'22	2,289	1,881	567	-	12	287	47	166	802	408	381	27
		(100)	(30.1)		(0.6)	(15.3)	(2.5)	(8.8)	(42.6)	(100)	(93.4)	(6.6)
'21	3,437	3,194	996	33	282	546	83	226	1,028	243	243	-
		(100)	(31.2)	(1.0)	(8.8)	(17.1)	(2.6)	(7.1)	(32.2)	(100)	(100)	
'20	4,120	3,778	1,131	20	452	714	68	325	1,068	342	342	-
		(100)	(29.9)	(0.5)	(12.0)	(18.9)	(1.8)	(8.6)	(28.3)	(100)	(100)	

자료: 보건복지부 제공

주: '기타'는 장애인복지시설, 보호치료시설 등을 의미함

☐ 개정안과 같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대상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할 경우, 일반아동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 및 비교분석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.

☐ 다만,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'지원·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' 방식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음.

< 지원·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>

- **(목적)**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,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 및 보호자의 생활실태와 정책욕구 파악을 위한 시계열 자료 마련
- * 종류 : 국가승인통계
- **(대상)** 보호대상아동 1,953명, 자립준비청년 490명, 그 외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 등 약 4천여명 및 그 보호자
- **(내용)** ①아동·청소년: 8개 분야 39개 항목, ②양육자 조사, ③성인진입자 조사
- **(방법·주기)** 면접조사(비대면 포함) / 연 1회(9~11월 중)
- **(관리주체)** 아동권리보장원

- 또한,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조사는 아동종합실태조사와는 조사 방법이나 절차 및 지표 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다음으로 개정안 중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을 살펴봄.
- 현재 정부는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상해·배상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, 동 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양육시설 및 그룹홈 등 모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대할 경우 보호유형에 따른 지원격차 해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.

< 참고 : 가정위탁아동 상해·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>

- **(목적)** 위탁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가정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
- * 법적근거: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(국가와 지자체의 책무), 제15조(보호조치), 제59조(비용 보조)
- **(대상)** 가정위탁보호아동(연장보호아동, 일시위탁아동 포함), 9,408명('24 기준)
- **(예산)** 국비 총 458백만원('25), 국비-지방비 매칭(서울5, 지방7)
- **(내용)** ▲ 위탁아동 후유장해, ▲ 부양자 후유장해(위탁(부)모 1인), ▲ 입원의료비, ▲ 통원 의료비, ▲ 암치료비(암진단급여금), ▲ 치아치료비, ▲ 상해·질병 입원일당, ▲ 유과·납치·인질 위로금, ▲ 강력범죄위로금, ▲ 얼굴성형, ▲ 일상생활배상책임, ▲ 정신과 질환, ▲ 골절 발생위로금, ▲ 폭력피해위로금, ▲ 식중독위로금

- (보험료) 1인당 68,500원 내외
- (주요 담보원칙) ▲위탁아동의 상해·질병관련 위험 담보, ▲위탁아동의 배상책임 담보(위탁부모의 민·형사상 책임 최소화), ▲유괴, 납치 등 외부적인 위험 제거

- 다만, 보험료 지원의 확대는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한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,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-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 예산(단년도 기준)은 국비 및 지방비 합산 약 5억 4,600만원으로 추정됨.

<산출 근거>

- (가정위탁) 9,408명* $\times$ 68.5천원** $\times$ (50~70%) = 441백만원 (기준)
 - * 보건복지부 「2025 보건복지통계연보」 참조
 - ** 보건복지부 「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1」 참조
 - *** 국비-지방비 매칭(서울5, 지방7)
- (시설아동) 9,471명* $\times$ 68.5천원** $\times$ (50~70%)=431백만원 (발의안)
 - * 보건복지부 「2025 보건복지통계연보」 참조
 - ** 위탁아동 상해·배상보험료 1인당 지원금액 기준 준용
 - *** 국비-지방비 매칭(서울5, 지방7)
- (그룹홈) 2,502명* $\times$ 68.5천원** $\times$ (50~70%)=115백만원 (발의안)
 - * 보건복지부, 「아동복지시설 현황실태조사」 참조
 - ** 위탁아동 상해·배상보험료 1인당 지원금액 기준 준용
 - *** 국비-지방비 매칭(서울5, 지방7)

자료: 보건복지부 제공

-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살펴보면, 아동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 수행중인 유사 조사(지원·보호아동 및

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)와 대상 및 내용 등이 중복되는 점을
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,
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는 보호유형에 따른 불
합리한 지원 차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,
다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수
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500